

**Vol. 04**

2022.04.15.

# Customs & Trade News

HANJOO CERTIFIED CUSTOMS AGENCY



HANJOO

T. 02-2017-2111

F. 02-545-1682

W. <http://www.hjcustoms.co.kr>

통관사업1본부 안만복본부장 mbahn@hjcustoms.co.kr

통관사업2본부 박주경본부장 jpark@hjcustoms.co.kr

통관사업3본부 장진명본부장 jmjang@hjcustoms.co.kr

통관사업1본부 남형우전임 hwnam@hjcustoms.co.kr

## CONTENTS

- I. 법령 개정사항
- II. 입안 예고
- III. 품목분류 변경고시
- I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I. 법령 개정사항

1. 「관세법」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관세탈루행위를 방지하고 세액보정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납세의 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그 세액에 대하여 보정을 신청하였어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세계관세기구 협약 개정에 따른 최신 품목분류체계를 반영하여 관세율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부당 과소신고된 세액의 보정신청 혜택 배제	종전에는 납세의무자가 과소신고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후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소액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확대	물가·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 체납세액의 기준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 연장	민간항공기 협정 대상 물품에 한정하여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을 3년 연장하여 2024년까지 면제하고,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조정함.

구분	내용
관세 환급 대상 확대	1)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후 수출사실을 세관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2) 여행자가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등에서 구입한 물품을 환불한 경우에는 자진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안전성 검사 결과에 따른 통관보류 근거 마련	세관장은 수출입 물품의 성분·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불합·불량·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국제우편물의 사전 전자정보 제출	세관장은 관세청장과 우정사업본부장이 협의하여 정한 국가에서 발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세관신고 정보 등이 포함된 전자정보를 사전에 제출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관우체국장으로 하여금 그 우편물을 반송하게 할 수 있도록 함.
관세율표 정비	세계관세기구(WCO)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하고, 변화된 무역환경에 맞추어 세목을 조정하는 등 관세율표를 정비함.

(3) 시행일

'22.04.01.

I. 법령 개정사항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 수출입·판매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고, 국제연합에서 통제물질로 지정했거나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등이 확인된 물질 등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범위에 추가하는 한편, 과태료를 체납한 자는 임의적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마약류·임시마약류의 수출입·판매 등 금지 또는 제한 조치 사유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대마를 제외한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수입·수출·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에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법,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벗어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마약류 등의 오·남용을 방지함.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범위 확대 및 명확화	1) 국제연합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이소토니타젠 (Isotonitazene) 등 3개 물질을 마약으로, 국제연합에서 향정신성물질로 지정한 디페니딘 및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에이엘-엘에이디, 페니부트 등 14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각각 추가함.  2)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로 지정된 물질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유사체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사체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

구분	내용
<p>원료물질 최대거래량의 부피량 정비</p>	<p>원료물질* 중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 의무가 면제되는 무수초산 등 6종의 물질의 최대 거래량 중 부피량을 무게량 기준으로 환산하여 정비함.</p> <p>* 원료물질: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p>
<p>과태료 체납 시 감경 금지규정 마련</p>	<p>과태료의 불합리한 감경을 방지하고 과태료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부과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함.</p>

(3) 시행일

'22.03.15.

I. 법령 개정사항

3.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우편물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환급하도록 하고, 덤프방지관세 등의 재심사에 관한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세 환급의 대상이 되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우편물 등의 범위를 정하고, 덤프방지관세 등의 재심사에 필요한 조사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관세 면제의 대상이 되는 국제경기대회 등 행사의 범위를 조정하고,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등의 가격 산정방식을 구체화하며, 내국인의 보세판매장 구매한도를 폐지하고, 관세 면제 대상 희귀병치료제를 확대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덤프방지관세 등의 재심사에 관한 규정 정비	덤프방지관세 등의 재심사에 필요한 조사사항을 기획재정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함.
관세 면제의 대상이 되는 국제경기대회 등 행사의 범위 조정	관세 면제의 대상이 되는 국제경기대회 등 행사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추가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등 이미 종료된 행사를 정비하려는 것임.
물품가격 산정방식의 구체화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의 가격과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탁송품의 가격은 과세가격에서 수입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 등을 뺀 가격으로 하도록 하여 물품가격의 산정방식을 명확히 정함.

구분	내용
관세 환급의 대상이 되는 우편물 등의 범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우편물 등으로 서 관세 환급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수출신 고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물품으로 정함.
내국인의 보세판매장 구매한도 폐지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금액한도를 폐지 함.
관세 면제 대상 희귀병 치료제의 확대	전신중증근무력증이나 신경섬유종증 1형 등 의 환자에 사용할 치료제를 관세 면제 대상 으로 추가함.

(3) 시행일

'22.03.18.

I. 법령 개정사항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444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의 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우수수입 업소로 등록한 자가 수입하는 품목에 대한 서류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여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특별관리영업자 관리대상 확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관리영업자로 관리하도록 하여 무신고 영업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함.
수입신고 시 서류제출 의무 완화	축산물이나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수산물을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발급하는 위생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함.

구분	내용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의 위해 정보 게시방법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제품명, 제조국과 제조회사 등에 관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우수수입업소의 서류검사 생략 요건 완화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자가 연 5회 이상 수입신고한 품목으로서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 서류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최근 3년간 연평균 5회 이상 수입신고한 품목으로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에도 생략 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함.

(3) 시행일

'22.03.02.

I. 법령 개정사항

5.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소독제 제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국내에 대체의약품이 없어 환자 치료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국가필수의약품의 수입 시 원제조원의 시험검사 성적서로 수입자의 시험검사 성적을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특허권등재자가 납부기간 이내에 등재료를 납부하지 않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의약품 제조업 허가증·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증 및 임상시험계획 승인서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그 밖에 의약품 제조업 허가·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 및 임상시험계획 승인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소독제 제품에 대한 관리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소독제 제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함.
특정 국가필수의약품 수입 시 시험검사 성적서 기준 완화	국내에 대체의약품이 없어 환자 치료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국가필수의약품의 수입 시 원제조원의 시험검사 성적서로 수입자의 시험검사 성적을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함.
특허권등재자의 등재료 납부기간 연장	특허권등재자가 납부기간 이내에 등재료를 납부하지 않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납부기간을 연장함.

구분	내용
<p>의약품 제조업 허가증 등의 전자문서로의 발급 확대</p>	<p>의약품 제조업 허가증·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증 및 임상시험계획 승인서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p>
<p>의약품 제조업 허가 등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p>	<p>그 밖에 의약품 제조업 허가·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 및 임상시험계획 승인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함.</p>

(3) 시행일

'22.03.09.

II. 입안 예고

1.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1) 개정 이유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적정표시 방법 변경 및 조사의뢰 금액 기준을 신설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적정 표시방법 개선	<p>현행 표시가 원칙이었던 원산지 표시 방법을 자동차 부품의 경우 최소 포장에 원산지 표시가 가능하도록 개정*</p> <p>*자동차 수출입업체 지원을 위해 산업부와 협의 개정 [산업부수출입과(21.11.15)회신]</p>
조사의뢰 금액기준 신설	<p>원산지 허위·손상변경 사건은 전부 조사의뢰 대상이었으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적발금액 2,000만원 이상 시 조사의뢰 기준* 신설</p> <p>*다만, 중대한 범칙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발 금액 2,000만원 미만이라도 조사의뢰</p>
밀봉 포장·봉인 상태 수입 물품 인정 범위 확대	<p>현행 물품의 특성(위생, 오염, 파손 등 사유)에 따라 제한적으로 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했으나, 포장·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 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포장상 원산지표시 인정</p> <p>*밀봉 포장·봉인의 방식이 다양하기에 개별 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성을 세관장의 판단으로 결정하도록 재량권 부여</p>

(3) 의견제출기한 및 시행 일자

의견제출기한 `22년 04월 04일 / 시행 일자 `22년 4월 중

Ⅲ. 품목분류 변경고시

1. SUPPORT STRINTEX TAPE 등 2 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① HADA PATCH ROLL; 25mm*4m ② BIO-SKIN PRO ; 80mm*2m ③ ULTRA BIO-SKIN ; 80mm*2m ④ NT50 ; 50mm*4.5m
	Support tape; LP SUPPORT STRINTEX K TYPE; 669
물품 설명	탄성을 이용하여 운동시 근육의 피로도나 부상방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직물제 테이프로 한면에 점착성 물질이 도포되어 있음
HS CODE	- 변경 전 : 제 6307.90-9000 호 (기본세율 10%) - 변경 후 : 제 5903.90-0000 호 (기본세율 10%)
변경 사유	단순히 긴 것을 절단하여 플라스틱 점착성 물질을 도포한 직사각형의 직물제이므로 제 5903.90-0000 호로 분류 (제 2022년 제 1 회 관세품 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2.2.24.

Ⅲ. 품목분류 변경고시

2. EJECTOR PIN 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Ejector Pin(EPH3-100)
물품 설명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에 부착하여 최종 성형 제품을 주형 밖으로 밀어내기 위해 사용하는 금속재질의 핀 형상의 물품
HS CODE	- 변경 전 : 제 8480.71-0000 호 (기본세율 8%) - 변경 후 : 제 8477.90-0000 호 (기본세율 8%)
변경 사유	플라스틱 사출성형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주요부품이므로 제 8477.90-0000 호에 분류 (제 2022년 제 1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2.2.24.

Ⅲ. 품목분류 변경고시

3. VHF RECEIVER 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VHF RECEIVER ; RE9000-2G
물품 설명	공항 관제탑에서 관제사와 조종사 간에 음성으로 항공교통 업무에 관한 정보를 받기 위한 VHF 무선 수신장치
HS CODE	- 변경 전 : 제 8526.91-2010 호 (WTO 협정관세 1.6%) - 변경 후 : 제 8517.62-9030 호 (WTO 협정관세 0%)
변경 사유	음성 정보를 수신받기 위한 기기로서, 항공기의 위치 정보 등을 수신하는 항행용 무선기기 (radio navigational aid equipment) 기능은 없으므로 제 8517.62-9030 호로 분류 (제 2022년 제 1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2.2.24.

Ⅲ. 품목분류 변경고시

4. WEAR RING 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WEAR RING; CN10, CM20, RS40
물품 설명	직물에 페놀수지가 함침된 링 형상의 물품으로 유압실린더에서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의 마찰력을 감소시키는 역할수행
HS CODE	- 변경 전 : 제 3926.90-1000 호 (WTO 협정관세 6.5%) - 변경 후 : 제 8483.30-9000 호 (기본세율 8%)
변경 사유	축의 회전시 금속 간의 마찰력을 감소하기 위한 베어링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제 8483.30-9000 호로 분류 (제 2022년 제 1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2.2.24.

Ⅲ. 품목분류 변경고시

5. BALL CAGE 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Ball bearings; ball cages(볼 베어링); Euro A; R.KOREA
물품 설명	구름운동을 안내하는 볼 케이지(cage)에 마찰을 감소시키는 볼 (ball)로 구성된 원통모양의 볼 베어링 (내접원경 : 32mm)
HS CODE	- 변경 전 : 제 8482.10-9000 호 (기본세율 8%) - 변경 후 : 제 8482.10-2000 호 (기본세율 13%)
변경 사유	내접원경이 32mm 인 원통형의 볼 베어링이므로 제 8482.10-2000 호로 분류 (제 2022 년 제 1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2.2.24.

Ⅲ. 품목분류 변경고시

6. BUMPER STOOL MAT 등 2 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BUMPER STOOL MAT F/SET ; B01-07-00
	MP05-HOUSTOOL135
물품 설명	바닥깔개 기능과 놀이기능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접이식의 유아용 놀이매트 (PE 충전재 형태)
HS CODE	- 변경 전 : 제 3918.90-0000 호 (WTO 협정관세 6.5%) - 변경 후 : 제 9503.00-3919 호 (기본세율 8%)
변경 사유	바닥깔개 기능과 놀이 기능 중 본질적 특성에 따라 품목 분류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 통칙 제 3 호 다목에 따라 최종호인 제 9503.00-3919 호로 분류 (제 2022 년 제 1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2.2.24.

I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1.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 통제 3월 26일 시행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써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57 개 비전략물자 품목을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포함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하였으며, 3월 26일부터 러시아, 벨라루스로 57 개 품목과 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비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기업은 별도의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출기업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 (www.yestrade.go.kr)에서 상황허가 대상 품목 여부를 확인 후 대상 품목일 경우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서 상황허가와 수출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수출허가 신청 관련 가이드라인은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전략물자관리시스템 공지사항\_수출허가 신청 가이드라인**

**공지사항** ☞ > 알림/정보마당 > 공지사항

· 게시물 검색  제목

☑ 총 743 개 / 현재페이지 [1/75] ☞ 상단의 검색어를 이용하여 검색하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정부파일
1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서버 점검 안내	2022.04.08	
2	벨라루스·벨라루스 비전략물자 품목 수출허가 심사 기준 안내	2022.04.04	
3	미 재무부 러시아 제재 관련 SDN 리스트 추가에 따른 주의사항 안내	2022.04.04	
4	벨라루스 및 벨라루스 57개 비전략물자 품목 수출허가신청 가이드라인	2022.03.28	
5	제29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안내	2022.03.25	
6	산업부·통신부 합동 대러 수출통제 기업설명회 영상	2022.03.17	
7	미국의 수출통제번호(ECCN) 57개 국영문 공지	2022.03.08	
8	제28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02호)' 개정에 따른 전문판정서 유효기간 만료 안내	2022.02.28	
9	전략물자 인포허브(InfoHub) 서비스 개시	2022.01.10	
10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실적보고(21년도 하반기) 및 운영보고(21년도) 작성 안내	2022.01.07	

I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2. 국제사회의 對러 금융제재 추가 동참 결정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동향 및 美·EU 등 주요국의 對러 제재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제사회의 對러 금융제재 (①러시아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 ②Rossiya 은행과의 금융거래 중단)에 추가 동참하기로 하였다.

다만, 농산물 및 코로나 의료 지원, 에너지 관련 거래 등 美에서 일반허가 (General License)를 발급하여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한 분야와 은행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거래를 허용할 예정이다.

주요국의 러시아 중앙은행·국부펀드 제재 조치	
미국	2.28 일 이후 러시아 중앙은행·국부펀드(NWF 및 RDIF) 거래 중단
EU	2.28일 이후 러 중앙은행 거래 중단, 3.2일 이후 국부펀드 (RDIF) 관련 프로젝트 참가 금지
일본	3.1 일 이후 러 중앙은행 거래 중단, 국부펀드 관련 별도 제재 없음

3 월 7 일 추가 제재를 포함하여 정부는 총 11 개 기관 및 자회사\*에 대한 거래 중단을 결정하였고, 러시아 국고채 투자는 3.2 일부터 중단된 상황이며, SWIFT 배제는 EU 발표에 따라 7 개 은행에 대해 3.12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 (3.1 일 발표) Sberbank, VEB, PSB, VTB, Otkritie, Sovcom, Novikom 및 관련 자회사

\* (3.7 일 발표) 러시아 중앙은행, 러시아 국부펀드 NWF 및 RDIF, Rossiya

#### I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 3. 세계최대자유무역협정 RCEP, 말레이시아서도 발효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8일 말레이시아에서도 발효됐다. 이에 말레이시아 무역부는 RCEP을 통해 말레이시아의 수출이 2억 달러 증가하고 코로나 19 팬데믹의 충격으로부터 경제가 점차 회복함에 따라 무역장벽을 없애고, 기업과 경제활동을 재도약시킬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며 RCEP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무역협정으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인구, 교역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RCEP은 2020년 11월에 체결됐고, 협정문 내 발효 규정에 따라 당사국 별로 아세안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한 지 60일이 되면 정식 발효된다. 중국과 일본 등 10개국에서는 올해 1월 1일 발효됐고, 한국은 2월 1일, 말레이시아는 3월 18일 각각 공식 발효됐다. RCEP 참여 15개국 가운데 12개국은 발효가 완료됐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미얀마 등 3개국의 발효만 남았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비준 절차가 늦어진 상황이고, 미얀마는 비준서를 기탁했지만, 쿠데타로 군부가 집권한 상황이라 발효 인정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는 상태이다.

#### I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 4. 중남미 최대교역국,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일 (화) 멕시코시티에서 타티아나 클로우티에르 경제부장관과 한-멕시코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여 한-멕시코 수교 60 주년을 맞아 '08년 이후 중단된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14년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멕시코 양국은 코로나 상황,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적 공급망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는데 우려를 하면서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가 공급망 강화,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통상협력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였다.

3월 2일 (수)에는 훌리오 호세 프라도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과 화상회담을 개최하여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협상 재개를 선언하고, 중남미 자원부국인 에콰도르와의 공급망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멕시코 및 에콰도르 통상장관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및 태평양동맹(PA) 가입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추진과정 또한 상호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멕시코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이자 올해 태평양동맹(PA) 의장국이며 에콰도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태평양동맹(PA) 가입 신청국에 해당한다.

I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5. 소량 및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등록 부담 낮춘다

환경부는 화학물질별 특성·용도 등을 고려하여 연간 제조·수입량 1 톤 미만인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자료를 차등화하고, 면제기준에 대한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신고 면제확인 요건을 완화하는 '화학물질 등록, 면제확인 간소화 방안'을 추진한다.

소량 다품목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은 여러물질의 등록에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료 확보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물질별 특성·용도 등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유해성 시험자료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며,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면제를 위해서는 해당 물질의 명칭, 고유번호를 반드시 알아야만 하나, 연구개발용으로 소량 수입하려는 신규화학물질은 국외 제조·생산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상세성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수입이 불가하여 연구개발에 차질을 겪는 경우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함께 대안 모색 및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3월 16일부터 '화학물질 등록, 면제확인 간소화 방안'을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간 제조·수입량 1톤미만으로 ①물용해도가1mg/l미만이거나, ②중간체 또는 공정속도조절제 용도에 한해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은 등록 신청시 환경 유해성에 관한 2 개의 시험자료 (어류급성독성 또는 물벼룩급성독성, 이분해성)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둘째, 국외 제조·생산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성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수입량 0.1 톤 미만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면제확인 신청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해당 물질의 명칭, 고유번호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유해화학물질은 명칭, 고유번호의 작성을 생략할 수 없으며, 연구개발 목적이더라도 성분 정보를 알 수 없는 물질이 무분별히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성분 정보를 알 수 없는 물질의 연간 총 수입량 합계가 100 kg 미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I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6. 식약처, ‘에이디비-푸비아타’ 등 5 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에이디비-푸비아타(ADB-FUBIATA)’ 등 5 종을 3월 7일에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다.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물질(5종)	
신규지정 (3종)	재지정 (2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로르핀(Brorphine)</li> <li>• 에이디비-푸비아타(ADB-FUBIATA)</li> <li>• 쿠밀-시에이치-메가클론 (CUMYL-CH-MEGACLON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플루오로에트암페타민 (3-Fluoroethamphetamine)</li> <li>• 4-플루오로에트암페타민 (4-Fluoroethamphetamine)</li> </ul>

‘브로르핀’은 체내에서 오피오이드 수용체(중추신경계)에 작용해 내성과 금단증상을 나타낼 우려가 있으며, ‘에이디비-푸비아타’는 합성대마 계열로 환각 등의 효과를 나타 낼 수 있고, ‘쿠밀-시에이치-메가클론’은 합성대마 계열로 환각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로써 이상행동, 느린 동공 반응 등의 부작용이 보고된 적이 있어 신규지정 되었다.

또한 현행 2 군 임시마약류 중 오는 5월 15일 지정이 만료될 예정인 ‘3-플루오로에트암페타민’과 ‘4-플루오로에트암페타민’을 2 군 임시마약류로 재 지정하였다.

임시마약류 분류 체계 및 관리 현황
<p>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 군과 2 군으로 분류하며 1 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을 말하고, 2 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말한다.</p>
<p>’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하여 총 233 종을 지정하였고, 이 중 ‘THF-F’ 등 150 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하였다.</p>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